

광주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단5343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흥기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망 C와 피고 사이에 2021. 10.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20. 8. 27.경 사망하였다.

나. 망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과 자녀 G, 망 C, H, I 및 피고가 있다.다. 피고는 2021. 10. 6.경 나머지 상속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2021. 10.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C는 2022. 4. 24.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 D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E의 상속인인 망 C에 대한 주식회사 J의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수한 채권자이다. 그런데 망 C는 무자력 상태에서 망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지분만큼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망 C의 상속인인 D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 C가 2013. 5. 23.경

주식회사 J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위 대출금 채권이 주식회사 K,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된 사실, ③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망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8. “피고(망 C)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8,638,238원 및 그 중 4,596,349원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가소329133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C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내용	지분	가액	순번	내용	채권발생일	금액
1	강원 평창군 M 의 1 N O 호	1/150	700,000	1	P 대출	2012. 3. 16.	10,000,000
2	아산시 Q R 호	1/200	330,000	2	서울특별시	2020. 4. 10.	31,446,000
				3	은행	2017. 5. 29.	5,026,000
합계			1,030,000	합계			46,471,000

따라서 망 C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망 E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피고와 I에게 위임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망 C에 대한 사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1. 10.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증여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망 C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자신이 망 E 인근에 거주하면서 생활비, 병원비 등을 부담하여 기여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을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에게 기여분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마지막으로 피고는, 망 C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의 유증이나 증여가 아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망 C의 권리가 유류분에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

별지

목 목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남구 [] [] []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아파트

1층 562.12㎡, 2층 내지 3층 각 547.00㎡, 4층 내지 12층 각 537.76㎡, 13층 534.04㎡, 14층 295.06㎡, 지하층 534.5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남구 [] 대 5775㎡

2. 광주광역시 남구 [] 대 16㎡

3. 광주광역시 남구 [] 대 94㎡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69.475㎡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대지권 5885분의 28.526 끝,

